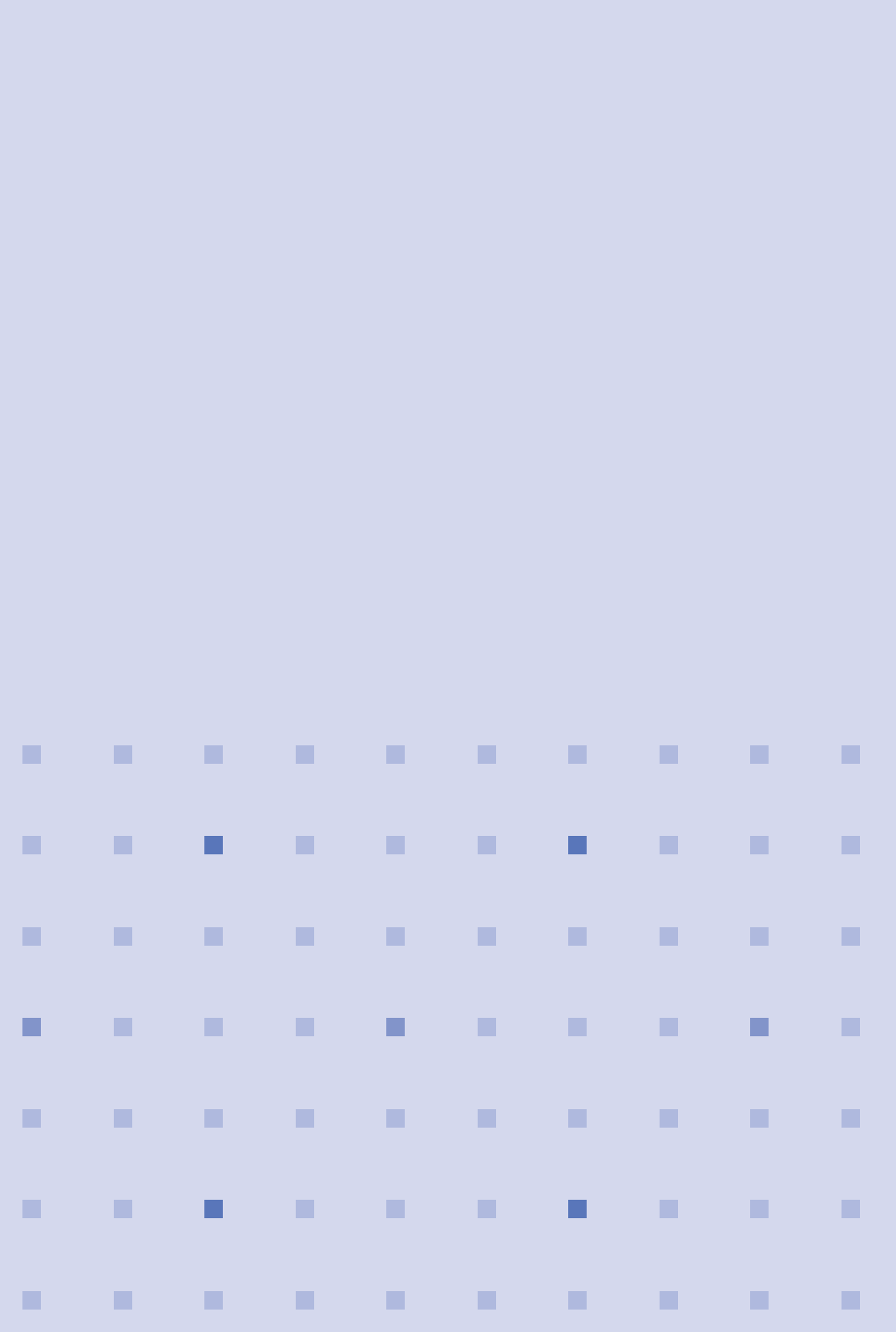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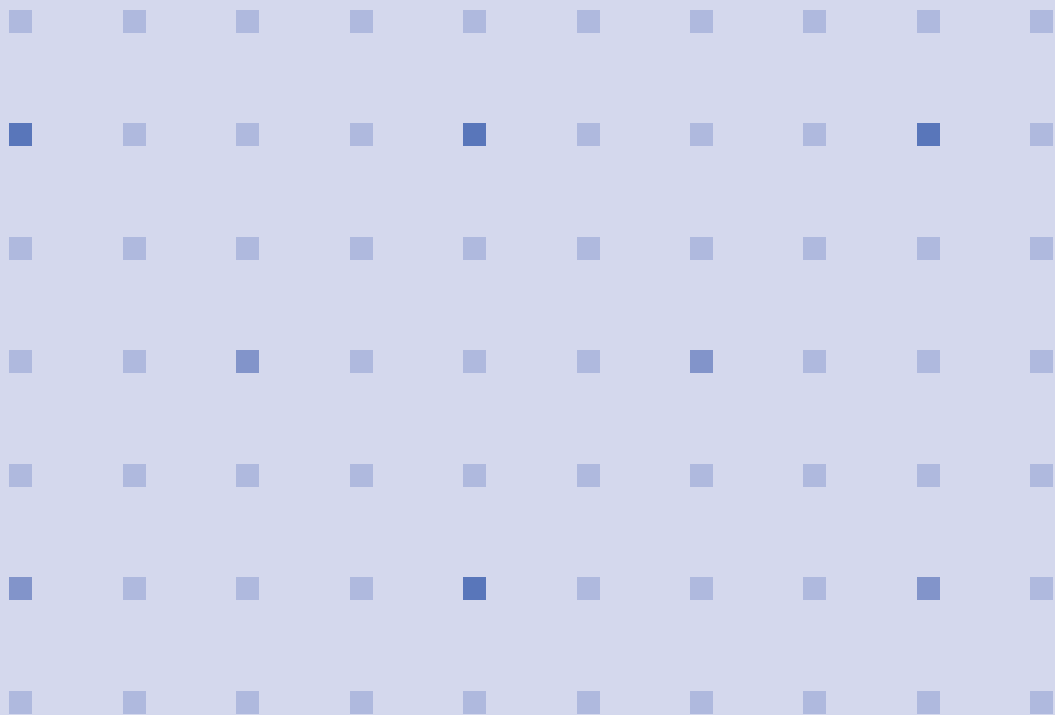
한·EU FTA

수출입통관 매뉴얼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한국관세사회







서 문

역사적인 한-EU FTA가 2011.7.1 잠정발효 되었습니다. 5억 인구나 16조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시장과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계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WTO DDA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가 체결된 점에 대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자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2007년 협상개시 이후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완성된 FTA가 기대했던 효과를 실제로 거둘 수 있을 지 여부는 이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정발효 이후 두달여 지난 현재 우리 기업들의 FTA 수출 활용도가 60% 수준으로 여타 FTA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FTA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협정의 복잡한 내용들을 숙지하여 실제 업무에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들여 한-EU FTA라는 고속도로를 개통하였는데 막상 운전자들이 이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용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고속도로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대사관에서는 EU 회원국 주재 여타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EU 기업 및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설명회를 개최하여 FTA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EU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FTA의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정보를 책자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FTA의 경우 각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규정 자체가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기업에서 이를 숙지 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FTA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품목별로 각각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재료 조달방식이나 해외가공 공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한-EU FTA 수출입통관 매뉴얼”은 한-EU FTA와 관련한 각종 설명회 계기에 제기되었던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차에 관한 실무적인 질문들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FTA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개요 부분은 간략히 다루는 대신 실제 상품의 수출입 업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절차별로 상세한 설명과 사례를 포함시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이 한-EU FTA 원산지 기준과 통관절차에 관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한-EU FTA를 더욱 잘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신 한국 관세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9월

주벨기에 · 유럽연합대사관

대 사 안 호 영

Contents · 목 차



제1장 한·EU FTA 수출업무

제1절 원산지 인증수출자	11
제2절 원산지 결정기준	15
제3절 원산지 사전심사	24
제4절 원산지 검증	26

제2장 한·EU FTA 수입업무

제1절 협정관세 적용신청	33
제2절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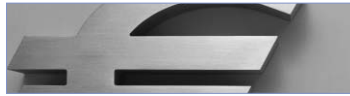


제3장 기업체 유의사항

제1절 서류 보관의무	45
제2절 협정관세 적용제한 및 보류	47
제3절 벌칙규정 및 사례	49

부 록

1. 수출(입) 업무 실무절차(요약)	55
2. 주요검색사이트	59
3. 한·EU FTA 관세율 양허 현황	60
4. FTA 용어집	64



제1장 한 · EU FTA 수출업무

제1절 원산지 인증수출자

1. 개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한국이나 EU 27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의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당국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산지 증명능력을 해당업체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EU 회원국이나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업체 소재지 관할 세관당국을 통해 사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지정을 받아야만 한-EU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였다더라도 수입통관 시점부터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는 1년, EU로 수출할 경우는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2. 인증수출자의 종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해 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2가지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3년간 인증혜택 부여가 가능하며, 업체별 인증요건 미 충족시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인증받은 해당품목(HS 6단위)에 대해서 원산지신고가 가능하다.

아래 표에서는 인증수출자 종류별로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인증수출자의 종류〉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좌동
인증기간	3년	2년
적용범위	해당업체가 수출 또는 생산한 모든 품목	해당업체의 인증품목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관리시스템 보유 또는 증명능력 보유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전문가 포함) 지정·운영 - 최근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이 없는 자 - 최근5년간 서류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기준)을 수출하는 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전문가 포함) 지정·운영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②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시스템의 현황자료 제출 가능) ③ 원산지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④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① 신청서(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HS 6단위 기준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③,④ 좌동
인증기간 연장	- 인증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업체별은 3년, 품목별은 2년간 연장)	

3.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바,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원산지 신고내용을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고, 장소 및 날짜와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하면 된다.

-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기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원산지 기재)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origin of products) preferential origin.

상기 신고내용은 한국어를 제외하고, EU 27개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22개 언어로 나타낼 수 있으며,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4.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반려사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총 188건의 원산지 인증 수출자 반려 사례중 원산지 기준 불충족 23건, 원산지 관련 서류 미제출 134건, 자진 반려요청 31건으로 나타났는 바, 수출업체에게 있어서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에 대한 작성능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사례 1〉

CCTV 카메라를 수출하고자 하는 A업체는 세관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부가가치기준 불충족·원산지확인서 제출 불가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다.

〈사례 2〉

디지털 셋톱박스를 수출하고자 하는 B업체의 경우, 세관에 인증수출자를 지정 신청하였으나, 누적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불분명·원기산출내역서 불비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다.

〈사례 3〉

C업체의 경우 직물을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산지소명자료 미제출·원산지 확인서 미확보로 자진하여 반려신청하였다.

제2절 원산지 결정기준

1. 개요

원산지 결정기준이라 함은 특정물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통상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당해 물품이 어느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는 실질 변형기준을 적용한다.

실질 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이 있고, 이외에 누적기준,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불인정공정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이 된다.

2.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어느 한 국가에서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농수산물, 광업제품 등 1차 산품이 주로 해당된다.

〈완전생산기준〉

구분	내용
광물성생산물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
식물성생산물	당사자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
산 동물	당사자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
수렵, 어로, 양식 생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 영역에서 어로, 양식 등으로 획득한 상품 - 당사국 영역밖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한 어로로 획득한 상품 과 배타적으로 동상품만 이용한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제품

나. 실질변형기준

(1) 세번변경기준

당해 제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 번호가 일정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 당해 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 Heading)이 사용되며 2단위변경 기준은 6단위 변경기준보다 많은 가공 등을 하여야 함으로 요건 충족이 용이하지 않다.

한편, 불인정공정만 수행된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원산지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이 불필요하다.

〈예시〉

CC	미삼(HS 12류) → 인삼엑기스(HS 13류)	2단위 “류”가 변경
CTH	견사(HS 5006) → 견직물(HS 5007)	4단위 “호”변경
CTSH	아연괴(HS 7901.11)→ 아연합금(HS 7901.20)	6단위 “소호” 변경

(2)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한-EU FTA에서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사용비율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장도가격은 최종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다만,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

〈부가가치기준〉

구분	내용
제품기준가격	EX-Works(공장도 가격)
계산공식	비원산지재료 가격/제품의 공장도 가격× 100

〈선택기준〉

한-EU FTA에서는 그동안 EU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견지해 온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동시 충족)대신에 많은 품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중 하나만 충족)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 재료 비율 50%이하를 충족시키면 되고, 각종 기계류 역시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비율 45~50%이하의 조건을 맞추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특정공정기준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은 주요 제품에 대해 특정한 제조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동 기준은 세번 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면직물, 견직물 등의 경우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날염작업이 수행될 것(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의류(HS 62류)의 경우는 제조공정(절단을 포함)을 수반한 직조공정 등을 거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상 실질변형기준은 한-EU FTA 협정문상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서 2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EU 나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자신의 수출 물품이 동 부속서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보충적 기준

가. 누적기준

제품의 생산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생산에 투입된 상대국의 상품이나 재료를 원산지제품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역내산(EU산 또는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다만, 이경우 제품을 생산한 협정 상대국에서 다음에 설명할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쳐야 한다.

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어느 제품이 협정 상대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한-EU FTA 협정문상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의 의미)

- 1)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 2)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 3)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4) 섬유류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 5)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 6)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연마 및 도정 작업
- 7) 당류의 착색(着色), 착향(着香) 또는 각(角)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제분
- 8) 과일·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 씨제거 및 탈각 작업
- 9)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10) 감별·체질·선별·분류·등급화 또는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 11)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작업
- 12) 표시·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 13)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 14)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 15) 시험 또는 측정
- 16) 1)부터 15)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 17) 동물의 도축

다.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 제품 가치의 일정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상기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쳐야 한다.

〈최소허용기준〉

구 분	내 용
일반제품 (가격기준)	10% 이하 (Ex-works)
섬유제품(HS 50~63) (중량 및 가격기준)	품목마다 기준이 상이 (8~30%, 중량 및 공장도가격기준 등 다양)

라.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 1) 개 별 법 :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2) 선입선출법 :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3) 후입선출법 :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4) 평 균 법 :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협정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마.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인도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며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바. 세트물품

품목분류결과 세트로 분류되는 경우는, 세트내의 각 상품이

- 1) 원산지 상품인 경우 :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하며,
- 2)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사. 포장용품 및 용기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용품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포함되며,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아. 간접재료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료 및 에너지
- 2) 설비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 3) 기계 및 도구
- 4)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아니하는 물품

자. 직접운송 원칙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이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국내로 직접 운송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동 물품이 제3국 경유시 단순하역이나 제품의 보존·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세관 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수입자는 상기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 사전심사

1. 개요

원산지 사전심사란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절차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대상은

- 1)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2)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3) 당해 물품의 생산 ·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청자는 이때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 · 품목번호 및 가격,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및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고,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4절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증명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다.

한-EU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으로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며, 수출국 관세당국에서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상품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간접검증 방식을 보완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국 세관공무원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검증에 참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수출입업체의 경우, 관세당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입 통관전에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기준 이해 및 특혜 통관절차에 대한 준수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원산지 검증 사례〉

■ 부가가치 원산지기준 불충족 - 스포츠 신발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후 국내로 수출된 스포츠 신발에 대해, 부가가치기준(RVC 40%)을 적용하면서 해외 중개업자의 마진이 포함된 제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한 사례이다. 현지검증을 통해 현지 생산자의 납품가격을 기초로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재계산한 결과 RVC 40%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산지를 부인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수입자는 8%에 달하는 관세를 소급해서 전액 납부해야 했다. 다국적기업 간 거래 또는 중개무역 거래일 때 종종 이런 오류가 발생된다.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국명 표기 위반 - 유모차

- 노르웨이 유모차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가명을 한-EFTA 협정에서 정한 대로 노르웨이를 의미하는 ISO 2자리 코드, "NO"로 표기해야 하는데 "EEA"(European Economic Association)로 표기한 사례이다. 노르웨이 수출자가 한-E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요령을 잘 몰랐던 탓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유모차를 수입한 국내 수입자는 8%의 관세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했다. FTA 시행 초기단계에서 이런 류의 오류가 자주 발견되고 있는데,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나 중요 기재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상대국의 법정기한 내 검증결과 미회신 - 목재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목재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등 위조의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검증당국(무역부)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측에서 법정기한(6개월) 내에 아무런 이유없이 검증결과를 회신해 주지 않은 사례이다. 명백히 수출국 정부당국의 업무태만이고 협정위반에 해당된다. 검증결과 미회신은 간접검증제도 하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입자는 8%의 관세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등 예측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되었다.

■ 원산지 허위신고 - 의약품

- 독일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본사가 있는 인근 스위스에서 항 공화물로 선적하면서 원산지를 스위스로 속여서 관세를 탈루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8%의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리적인 여건과 다국적기업간 내부거래를 교묘히 이용하여 원산지를 세탁한 전형적인 불법우회수입사례이다. 앞으로 미국, EU와의 FTA 교역이 본격화되면 이런 유형의 불법우회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사건이다.

■ 해외 수출자 폐업에 따른 원산지 검증 불능 - 조약돌

- 해외 현지 수출자가 수출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되자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이 불능상태에 빠진 케이스이다. 필리핀에서 수입된 조약돌에 대해 우회수입 되었다는 의심이 제기되어

필리핀 세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현지 수출자가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라져 더 이상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세관 측에서는 우리나라 세관에 특혜관세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이 경우 필리핀에서 조약돌을 수입한 국내 수입자들은 속절없이 특혜관세의 적용을 취소당하고 3%의 관세를 전액 소급해서 납부해야 했다. Long-term 베이스로 신뢰할 만한 수출자와 거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해외 수출자의 자료제출 거부 - 신발, 가방

- 해외 현지 수출자가 수출국 세관당국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에 응하지 못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이다. 스위스에서 수입된 명품 브랜드의 신발 및 가방에 대해 우회수입 의심이 제기되어 스위스 세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현지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수출자는 일종의 오퍼상으로서 해당 물품을 실제 생산하지도 않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입자는 8%의 관세를 소급해서 전액 납부해야만 했다. 해외 수출자의 잘못은 곧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 전자제품

- 국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면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명·규격도 엉터리로 기재하고 서명도 누락했던 사례이다. 이에 따라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던 것인데, 검증결과

담당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부실발급으로 밝혀졌다. 각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이 달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다.

■ 원산지증명서 대리서명 - 운송기기

- 수입국 수입자의 요청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해 주면서 서명권자인 상사의 이름을 흉내 내어 원산지증명서에 대리서명을 한 사례이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발급할 때는 사내에 지정된 서명권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FTA특례법규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려는 기업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명대리는 인장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통할 것 같지만 서구에서는 서명대리가 중대범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리 서명할 직원을 여러 명 지정해 놓는 것이 대비가 될 것이다.

■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시 - 마네킹

-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마네킹을 공급받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원산지미상물품으로 처리된 사례이다. 다른 생산자가 만든 물품을 납품받을 때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고,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서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원산지도 불인정되지만 형사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스캐닝해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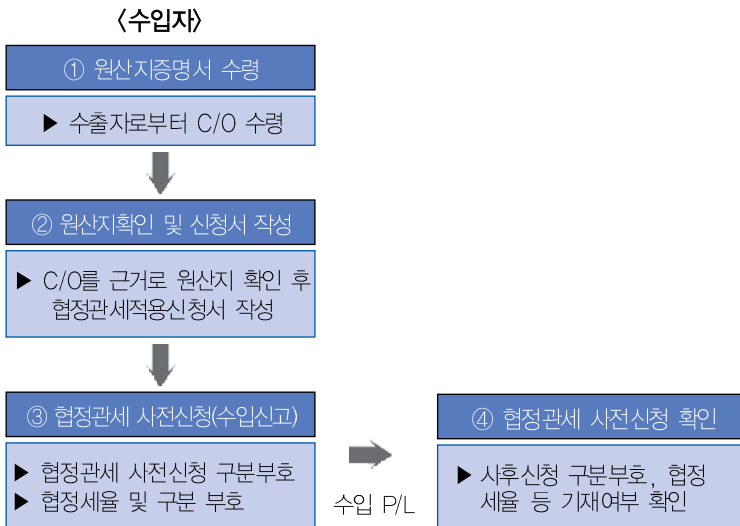
제2장 한 · EU FTA 수입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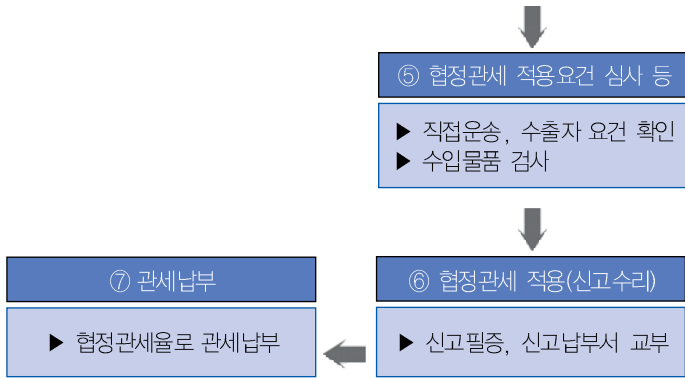
제1절

협정관세 적용신청

한-EU FTA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세관이 요구할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음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 및 기재요령을 설명한 것이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①신고번호 : XXXXX-XX-XXXXXXXX-X ②신고일자 : YYYY/MM/DD

③수 입 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XX (FAX) XXXXXXXXXXXX

(전자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④ 협정관세신청구분: [X] (A:수리전, B:수리후) ⑤ 신청일자 : YYYY/MM/DD

⑥ 수출자 : (상호) XXXXX (국가명) XX (성명) XXXXXXXXXXXXX
(주소) 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X

⑦ 생산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X

999란 ⑧ 원산지증빙서류 : [X] (1:원산지증명서, 2:사전심사서, 3:동종동질물품)

⑨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X] (1:기관, 2:자율) ⑩ 원산지 : XX

⑪ 기관명 및 종류 : XXXXXX, [X] (1:국가기관, 2:상공회의소, 3:기타)

⑫ 발급번호 : XXXXXXXXXXXXXXXX ⑬ 발급일자 : YYYY/MM/DD

⑭ 총순증량 : 999,999,999 XXX ⑮ 적출국 : XX

⑯ 적출항 : XXXXXXXXXXXXXXXXXXXX ⑰ 출항일 : YYYY/MM/DD

⑱ 환적국 : XX

⑲ 환적항 : XXXXXXXXXXXXXXXX ⑳ 환적일 : YYYY/MM/DD

㉑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 [X] (Y:발급, N:미발급)

㉒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XX

㉓ 제3국 송품장 발급여부 : [X] (Y:발급, N:미발급)

㉔ 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XX

㉕ 원산지인증수출자 유무 : [X] (Y:있음, N:없음)

㉖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XXXXXXXXXXXXXXXXXXXX

- ⑳ 품명 : XXXXXXXXX
- ㉑ 모델·규격 : XXXXXXXXXXXXXXXXXXXXX
- ㉒ 총순중량 : 999,999,999 XXX
- ㉓ 분할수입 : [X] (Y:분할, N:전량) ㉔ 분할차수 : 999
- ㉕ HS부호 : 9999.99 ㉖ 협정관세율(구분) : 9,999.99(XX XXXX)
- ㉗ 원산지결정기준 : [X] (A:완전생산, B:세변변경, C:부가가치, D:조합기준, E:역외가공, F:기타)

=====

FTA관세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① 신고번호	○ 수입신고서 (1항목의 신고번호를 기재)	40620-08-0700105-
② 신고일자	○ 수입신고서 (2항목의 신고일을 기재)	2008/01/15
③ 수입자 - 상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전자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 통관 고유 부호	○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 납세의무자 상호를 기재 -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기재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AX번호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자주소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 기재	- 모나리자(주) - 홍나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 02-402-7896 - 02-402-8816 - trade@monarisa.com - 112-81-66062 - 모나리자1771025
④ 협정관세 신청구분	[X] (A:수리전, B:수리후) (필수)	- 수리전 A, 수리후 B
⑤ 신청일자	○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자를 기재	- 2008/02/01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⑥ 수출자 - 상호 - 국가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AX번호 기재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함)	- ABC Corporation - 칠레의 경우 CL - JOELLE LAU -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Singapore - 68-6355-2050 - 68-6355-2051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⑦ 생산자 - 상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 기재 - 회사명을 기재 - 대표자 성명을 기재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AX번호 기재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	- CBA Corporation - Tan Juan Fook - 371 Beach Road #10-11 Keypoint Singapore - 68-7755-7777 - 68-7755-7780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⑧ 원산지 증빙서류	○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근거자료 기재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 1 - 원산지증명서 등 : "1"로 기재 - 사전심사서 : "2"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동종동질물품 : "3"로 기재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1
⑨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체	○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를 기재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1 - 기관발급의 경우 : "1"로 기재 - 자율증명(수출자,생산자,구입자 작성·서명)의 경우 : "2"로 기재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1
⑩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를 기재 -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 SG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⑪ 기관 명 및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인 경우 : "1"로 기재 - 상공회의소인 경우 : "2"로 기재 - 기타의 비국가 기관 : "3"으로 기재 * ⑨번 항목이 "1"인 경우에만 기재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Singapore Customs [1]
⑫ 발급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H나 기재 	-SCCON200603010001
⑬ 발급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자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자가 2008.2.1인 경우 : 2008/02/01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자를 기재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자를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자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기재 생략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1
⑭ 총순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 	- 총순중량이 1000KG 이면 1000KG기재
⑮ 적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선적국인 싱가포르인 경우 : SG
⑯ 적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상의 선적항을 기재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 Singapore
⑰ 출항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08.2.1인 경우 : 2008/02/01
⑱ 환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 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 싱가포르 출발 일본을 환적한 경우 : JP
⑲ 환적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 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 Yokohama
⑳ 환적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 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 환적일이 2008.2.20인 경우 : 2008/02/20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㉑ 연 결 원 산 지 증 명 서 발급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 상대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를 기재 -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 "Y"로 기재 -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미발급된 경우 : "N"로 기재 * 한·아세안 FTA에 한함 	- 베트남산 물품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재수출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 [Y]
㉒ 연 결 원 산 지 증 명 서 발급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 발행국이 베트남인 경우 : VN
㉓ 제 3 국 송 품 장 발급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 "Y" ○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 "N" 	-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Y'기재
㉔ 제 3 국 송 품 장 발급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송품장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국가코드 기재)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JP기재
㉕ 원 산 지 인 증 수 출 자 유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Y"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 "N" 	- 인증수출자인 경우 Y를 기재
㉖ 원 산 지 인 증 수 출 자 번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000-00-00000
㉗ 품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서 ㉑항목의 품명을 기재 	- Aviation engine oil
㉘ 모 델 · 규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서 ㉑항목의 모델·규격을 기재 	- AEO-100S
㉙ 중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유탄유 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경우 : 500kg
㉚ 분 할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기재 -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 "Y"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전량신고시 : "N"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분할신고시 : Y
㉛ 분 할 차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분할차수 기재 	- 2회차 분할신고시 : 2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③② HS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상의 HS부호 6단위를 기재 * 수입신고서의 HS와 C/O상의 HS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C/O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C/O에 HS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의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HS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상 6단위 HS : 2710.19
③③ 협정관세율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협정관세율(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 적용받고자 하는 FTA의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싱 FTA에 따라 항공기용 유탄유 (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 3.5(Z1)
③④ 원산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물품의 종류를 기재 - 완전생산물품 : "A"로 기재 - 세번변경기준 총족물품 : "B"로 기재 - 부가가치기준 총족물품 : "C"로 기재 - 조합기준 총족물품 : "D"로 기재 - 역외가공기준 총족물품 : "E"로 기재 - 기타 원산지기준 총족물품 : "F"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생산물품의 경우 : [A]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조합 기준의 경우 : [D]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선택 기준의 경우 - 세번변경기준 적용 : [B] - 부가가치기준 적용 : [C]

제2절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이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자의 이러한 사후 적용신청에 대해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명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환급조치 하게 된다.



제3장 기업체 유의사항

제1절

서류 보관의무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FTA특례법령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 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2) 수출자

-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

- 수출자 또는 협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제2절 협정관세 적용제한 및 보류

특정한 사유로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바, 수출입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

1. 협정관세 적용제한

가. 요건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결과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입자가 사전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 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⑤ 조사대상자가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⑥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나. 조치사항

협정관세 적용신청일로부터 5년 내 관세법의 경정·부과고지 규정에 의거 부족세액을 부과·징수한다.

2. 협정관세 적용보류

가. 개요

세관장이 원산지조사(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조사결과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물품과 동종 동질 물품을 추가로 수입신고하는 때에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한다.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한 경우, 해당자에게 적용보류 통지를 하고,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나. 적용보류 해제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한다.

제3절 벌칙규정 및 사례

한-EU FTA의 합법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FTA특례법상 벌칙 규정으로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 형벌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수출자, 생산자 등이 제출한 비밀 취급 자료를 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②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작성 또는 발급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
- ③ 300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한 자 (30일내 수정통보한 자 제외)

2. 양벌규정

-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임원·직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 ②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과태료

- ① 1천만원 이하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500만원 이하
 - 수출자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받고도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 등

〈주요 위반사례〉

- 미국 FTA 원산지 검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A사를 들 수 있는데, A사는 멕시코에서 수천개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NA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자료보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미세관에게서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음.
 - A사는 멕시코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수천 개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NA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음.

- 미 세관은 2001년 A사에 수입제품의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A사는 요청 자료가 수출자만 보관해도 되는 자료라고 주장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함.
 - 미 세관은 작성자와 관계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증빙하는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A사에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이 밖에 B사의 수입제품 가격 허위 신고, C사의 원산지허위신고 및 자료보관의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있음.
- B사는 연유와 인스턴트 드링크 믹스(Instant Drink Mix) 등을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기업으로 NAFTA하에 쿼터제를 적용받는 특정 품목을 쿼터 소진 후 수입할 때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관련 제품의 가격을 종전 신고 가격의 1/10 수준으로 낮추어 신고하여 관세를 탈세한 것이 밝혀짐.
 - 이에 B사는 350만 달러의 탈루 관세와 더불어 2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관련자들은 최대 2년형 선고 및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음.
 - C사는 멕시코에서 스피커를 수입하면서 NA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미 세관의 조사 결과 수입 스피커가 제3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멕시코에서 조립한 것으로, 이는 NAFTA의 원산지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원산지 허위신고와 더불어 관련 자료 보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미 세관에게서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음.



부 록

1. 수출(입) 업무 실무절차(요약)

확인순서		수 입	수 출
1	협정발효국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협정 정식발효국에만 적용 :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 페루 - 협정이 타결되었으나 미 발효중인 FTA는 미적용 : 미국 ※ 수출자는 C/O 발급주체로 자료보관의무 및 검증대상이 됨 	
2	품목번호 (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번호는 6단위까지가 세계 공통이며 그 이하는 국가마다 다름(한국10단위, 미국10단위, 일본9단위, EU8단위) 예) 7116.10.2000 71-류, 16-호, 10-소호 -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에서는 6단위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적용세율은 6단위 이하 세분류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 필요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용 - 해당국 세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 - 관세청 홈페이지, 무역협회 홈페이지, KOTRA FAX 서비스, 해당국 세관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 세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 - 관세청 홈페이지, 무역협회 홈페이지, KOTRA FAX 서비스, 해당국 세관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3	관세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관세율이 무세 또는 0%인 경우 실익이 없음 C/O 발급 불요 - 관세혜택=실행세율-FTA 협정세율 - 관세청 FTA 포털에서 세율및원산지결정기준을 클릭하면 (http://fta.custom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년도의 양허세율 및 실행 중인 모든관세율을 알 수 있음 - 협정세율 적용배제 및 상호대응 세율 적용물품인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대국의 연도별 협정 세율을 알 수 있음.

확인서류		수 입	수 출
3	관세혜택	※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특례법시행령 별표 3의 2에서 확인	
4	증빙서류 준비 및 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① 일반기준 = 기본 원칙 + 분야별 특례 ② 기본원칙=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③ 분야별특례=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용기 ④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 C/O 발급, 제공 ※ 일반기준 및 품목별기준 동시 충족여부 - 결정기준 검토 순서 ① 재료내역 확인(BOM) ② 구입경로 확인 ③ 품목번호 확인 ④ 최종제품 원산지결정
5	협정세율 적용 신청	- 원칙 : 수입통관시 신청 예외 : 수입신고 수리후 1년내 신청 - C/O제출 면제대상여부 확인 (소액물품 등) - 관세할당품목 추천을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	
6	관련서류 보관	- 보관기간 : 수출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특례법) 〈협정상〉 - 칠레 : C/O 서명일로부터 5년 - 싱가포르 : C/O 발급일로부터 5년 - EFTA : 5년 - ASEAN : C/O 발급일로부터 3년 - 인도 : C/O 발급일로부터 5년 - EU : 5년	

	확인순서	수 입	수 출
6	관련서류 보관	보관서류 - 원산지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서류 - 수입물품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서류	① 수출자 보관서류(C/O) - 상대국에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 C/O발급 신청서류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② 생산자 보관서류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 FTA 시대에 기업들이 준비해야할 사항 〉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준비사항
<p>FTA에 대한 CEO의 인식</p>	<p>〈FTA 에 대한 오해〉 발효되면 아무 준비 없이도 당연히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것으로 오해</p> <p>〈미국 관세청 추정사례〉 H사 200억추징(89년), F사 500억원 벌금부과(01년), P사 400억원 벌금 부과(06년)</p>	<p>〈CEO 관심도 제고-FTA 대책팀 등 설치〉 A사는 T/F팀을 구성, 2년간 원산지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캐나다 세관의 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p> <p>〈관계시간 협력체제 구축〉 다수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제공 받는 경우, 주요 1,2,3차 협력업체들과 원산지발급 MOU 체결</p>
<p>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p>	<p>〈전산인프라 및 전문인력미 보유〉 복잡한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 판정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고 판정인력도 없음</p> <p>- 미국 관세청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우선 검증대상에 포함시키며 전문적인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징</p>	<p>〈전산 인프라구축〉 회계, 구매부서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협력체계를 연결하는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p> <p>〈전문 인력양성〉 수출품목이 원산지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p> <p>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을 것</p>
<p>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을 것</p>	<p>〈EU 협정(특혜)관세 수혜의 전제 조건〉 EU가 제공하는 관세특혜를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요건을 충족하여 세관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나</p> <p>- 기업은 CEO의 관심부족, 원산지 관리능력 미비 등으로 인증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실정</p>	<p>〈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전산시스템 도입, 전문 담당자 지정, 협력업체와의 원산지 입증 정보교환체제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여</p> <p>- 해당 분부세관 등에 신청 -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않을 경우, FTA 발효 이후에도 관세특혜 수혜 불가능</p>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준비사항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비한 사전준비	<p>〈필요성〉 한-EU FTA에서는 기업은 기 발효 FTA 와 차원이 다른 고강도의 원산지 검증을 받게 됨.</p> <p>- EU : 수입건의 0.5% 랜덤검증, 연 3,000건 정도의 검증을 받게 될 전망</p>	<p>〈사전검증〉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출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검증</p> <p>- 취약부분인 부가가치비율, 원재료 관리 및 증빙서류 보관실태 위주로 중점 점검</p> <p>- EU 검증 예상업종 선별하여 사전 모의 검증 실시</p>

2. 주요검색사이트

검색항목	검색사이트
FTA 협정 및 관련법령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economic/fta/index.jsp)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 기준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양식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수출 활용) 원산지증명서발급) 협정별원산지증명서모음
기타 FTA 원산지관련 서식	특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위 4 각종서식 등 확인)참조
협정국 HS코드 검색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협정국 HS코드 검색)수출, 수입선택
품목번호 검색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수입활용) 품목번호 확인 하단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외국 인장검색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수입활용)인장서명검색(외국)
EU 관세율 데이터베이스 (TARIC)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

3. 한·EU FTA 관세율 양허 현황

가. 개요

공산품, 임산품 전 품목 5년 내 전품목의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다.

- 수입액 기준 : EU-100%, 한국-97%
- 품목 수 기준 : EU-99.6%, 한국-93.6%
- ※ 양측 모두 쌀 제외

〈한·EU FTA 상품 양허 결과〉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즉시	9,195	81.7	9,952	94.0
2~3년	625	5.5	282	2.9
5년	718	6.4	269	2.7
5년 내 계	10,538	93.6	9,803	99.6
6~7년	111	1.0		
10년	399	3.5		
10년 초과	169	1.5		
양허제외/현행관세	44	0.4	39	0.4
총 합계	11,261	100	9,842	100

나. 주요 양허내용

(1) 공산품 양허

양측 모두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발효 후 3년 내 조기 철폐 비중

(품목수 기준)이 한국 95.8%, EU 99.4%의 높은 수준에 이른다.

〈공산품 양허〉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즉시 철폐(A)	8,535	90.7	7,201	97.3
3년 철폐(B)	478	5.1	151	2.1
조기 철폐 (A+B)	9,013	95.8	7,352	99.4
5년 철폐	346	3.7	46	0.6
7년 철폐	45	0.5	-	-
총 합계	9,404	100	7,398	100

(2) 농산물 양허

한국은 1,449개 품목 중 610개(42.1%) 품목을 즉시철폐하고 EU는 2,064개 품목 중 1,896개(91.8%)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하였다.

■ 한국

〈한·EU FTA 농산물 한국 양허 결과〉

양허유형	품목 수	비중(%)	주요품목
양허제외	16	1.1	쌀
현행관세	25	1.7	감귤, 고추, 마늘, 양파(신선, 냉장, 건조), 감자(신선, 냉장), 흑설탕, 대두, 보리(겉보리, 쌀보리), 인삼(미삼, 분삼, 수삼, 잡삼)
현행+TRQ	12	0.8	전탈지 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TRQ	1	0.1	오렌지
계절관세	1	0.1	포도

15+TRQ	6	0.4	치즈, 보리(맥주맥, 맥아)
12+TRQ	6	0.4	보조사료, 변성전분
10+TRQ	11	0.8	버터, 조제분유, 유장(식용)
20	2	0.1	사과(후지), 배(동양배)
18	7	0.5	참기름, 참깨, 땅콩, 녹차, 생강
16	1	0.1	설탕(백설탕)
15	90	6.2	육유, 젓소, 쇠고기, 계란, 우유, 표고버섯, 송이버섯, (조제저장처리), 주정, 메밀, 전분(감자, 고구마, 매니옥, 옥수수 등), 시료용 근채류, 녹두, 녹용, 녹각, 대추, 밤, 잣, 호도(미탈각), 키위, 인삼류(홍삼, 홍삼엑기스), 혼합조미료 등
13	27	1.9	닭고기(냉동 가슴, 냉동 날개), 오리고기, 난황, 고구마, 옥수수(팝콘용), 스위트콘(건조), 대추(냉동) 등
12	16	1.1	고사리, 들기름, 송이버섯(냉동, 건조), 양파(냉동), 멜론, 수박, 혼합주스(포도) 등
10	275	19.0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냉장 삼겹살, 목살, 갈비), 양고기, 혼합분류, 발효유, 마요네즈, 누룩, 앞담배, 감, 강낭콩, 수수(종자용), 너타리버섯, 인조꿀, 레몬, 로열젤리 등
7	45	3.1	과일주스(레몬) 등, 썸, 맥주, 밀, 토마토 (신선, 냉장) 등
6	3	0.2	호도(탈각)
5	278	19.2	보드카, 브랜디, 초콜릿, 시탕, 비스킷, 식빵, 배추, 양송이, 콩 등
3	14	1.0	밀가루, 마가린, 오렌지주스(냉동) 등
2	3	0.2	레몬, 자두, 아보카도
즉시철폐	610	42.1	홍차, 커피(생두), 포도주, 코코넛, 아몬드, 코코아 조제품, 올리브, 파스타, 장미, 국화 등
총합계	1,449	100.0	

■ EU

〈한·EU FTA 농산물 EU 양허 결과〉

양허유형	품목 수	비중(%)	주요품목
즉시	1,896	91.8	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 꿀, 녹차, 화훼류, 비스킷, 음료, 간장 등
3년	10	0.5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 등
5년	119	5.8	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 덱스트린, 오렌지, 감귤 등
양허제외	39	1.9	쌀
합계	2,064	100.0	

4. FTA 용어집

A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어로 1967년 설립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하여 현재는 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가 가입하여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음. 2007.6부터 한·ASEAN FTA가 발효중

■ Abatement

감세. 관세 등을 일부 경감해 주는 것

■ Acceptance of declaration

수입신고수리.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 및 세금납부 등 정상적인 수입신고절차를 완료한 경우 세관장이 내리는 행정처분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9년 1월 호주의 보브 호크 총리의 제안에 따라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실체간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의 범정부간 협력기구

■ Applied duty rates

실행관세율, 통관당국이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율

B

- **Back-to-Back C/O**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 **Basic duty rates**

기본세율,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관세율로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하며 잠정세율, 협정세율, 탄력관세 등에 대응하는 개념

- **Beneficiary duty rates**

편익관세,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않는 특정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의 수입시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의 범위내에서 관세에 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

- **Beneficiary country(goods) for preferential tariff**

특혜대상국(물품),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관세보다 낮은 저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물품)

- **Blue Ocean**

경쟁자들이 없는 시장을 의미하는 경제용어. 레드오션과 차별되는 개념. 높은 수익과 무한한 성장이 존재하는 시장을 뜻한다.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시장을 떠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

- **Build-down method**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보는 방법

■ **Build-up method**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 대비 원산지 재료가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C

■ **CC(Change of Chap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원료의 HS와 완제품의 HS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류)가 변경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원료의 HS와 완제품의 HS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호)가 변경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CTSH(Change of Tariff Sub Head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원료의 HS와 완제품의 HS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호)가 변경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가격조건, 인코텀즈(ICC :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작성된 정형화된 국제 무역조건을 해설해 놓은 규정) 중 하나임

■ **Carry-in**

반입.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

■ Cartel

기업연합.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 산업부문의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법률적, 경제적으로 각 기업의 독립성은 유지함

■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에 관한 협정과 과세가격평가에 관한 협정의 적용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체약국간의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도모하고 관세기술과 이에 관련되는 관세제도의 발전 및 개선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표, 관세부과의 편리를 위하여 원료와 거기에서 파생된 일련의 상품을 동일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품의 속성, 구성재료, 형상, 용도 등에 따른 약 56,000개인 상품을 21부, 99류 등으로 분류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 Certificate of declaration

신고필증, 수입 또는 수출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일단 유효한 것으로 접수한 후 발급되는 서류

■ **Concessive duty rates**

WTO에서 스스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통상 기본세율보다 낮음

■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공산품의 경우 제도가공이 이루어진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

■ **Country Schedule**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퀴시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 이행 일정표

■ **Criteria of Origin certification**

일반적으로 원산지 확인기준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과 실질적 변경기준 등을 운영하고 있음.

■ **Cumulation**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

■ **Customs Value**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원칙에 따라 물품의 판매자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을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할 가격

D

- DDA(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년 11월 출범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명명

- Duty drawback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동 재료가 사용된 완제품이 수출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

E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 1960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반대하여 영국 등 7개국이 스톡홀름 협정에 의거 창설, 그 후 회원국의 변동이 있어 현재는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Swiss Confederation), 노르웨이(Kingdom of Norway), 아이슬란드(Republic of Iceland), 그리고 리히텐슈타인(Principality of Liechtenstein)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6.9.1부터 한?EFTA FTA 발효 중.

- Emergency duty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보호될 필요가 인정될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가하여 추가하는 관세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 EU(European Union)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에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1994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유럽공동체(EC)의 새 명칭. 본부소재지는 브뤼셀.

■ Euro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단일 통화

■ Exemption

면세. 관세 등 세금 전체를 면제해 주는 것

F

■ FOB(Free On Board)

운송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본선인도가격을 말하며, 그 상품이 수출된 때에 감면, 면제 또는 환급되는 내국소비세를 포함하지 않음

■ FTA(Free Trade Association)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의 역내관세 및 시장점유율 제한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통합의 초보단계.

발라사의 경제통합 5단계설

자유무역협정	가맹국간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지역 내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 예)NAFTA, EFTA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 역외 공동관세 부과 예)베네룩스 관세동맹, 적도아프리카 관세동맹
공동시장	관세동맹 +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예)EEC, 중미공동시장(CACM), 안데스공동시장 (ANCOM)
경제동맹	공동시장 +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조정 예)베네룩스 경제동맹
완전 경제통합	경제동맹 + 모든 경제정책의 통일 예)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의 EU

■ FTA관세 특례법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FTA형 비즈니스모델

수출업체와 관련이 있는 FTA별 원산지기준,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가공 및 해외수출까지 FTA별 특혜요건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FTA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관세혜택 및 이윤극대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FTA환경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 FEZ(Free Economic Zone)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 **Flexible Tariff**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법률(관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

■ **FTZ(Free Trade Zone)**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 유통,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G

■ **G7 Currency**

선진7개국 통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의 통화를 말함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8년 1월 1일 발족된 것으로 그 목적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

■ **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 중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

■ **GI(Geographical Indication)**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WTO 협정에 규정되어 있음. 보르도 포도주, 스카

치 위스키,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제 상품

■ GMOs(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주로 Biotechnology 기술의 한 분야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유전자, 수량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등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어 이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생물체

■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

H

■ HS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으로서 호와 소호 및 관련 코드, 부·류·소호의 주와 HS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등을 포함한 품목분류표를 의미하며, 관세, 통계, 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다목적, 다용도 통일 국제품목표이며 앞부분 6단위는 세계공통이며 이후 7단위부터 각 국가의 실정에 맞추어 부여하며 우리나라는 10단위를 기준으로 함.

I

■ **International cooperation tariff**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대한 협상을 통해 형성된 관세

■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상표권, 특허권 등과 같이 물품에 체화된 특정한 지적인 권리를 말하며, 일정기간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

■ **In-quota**

세율 연간 할당물량 이내의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

K

■ **Kyoto convention**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으로 일명 교토협약이라 함. 1973년 교토에서 개최된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2003년 가입.

M

■ **MC(Value of import Content)**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재료(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 이하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

■ Merchandise processing fee

대미수출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미국은 가액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가액의 0.21%에 해당하는 물품취급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MFNT(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

■ Minimal operation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단순가공 또는 불충분 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Modality

FTA협정에서 상품분야의 자유화 품목 및 방식 등을 정하는 것으로, 상품협정은 본문, 부속서, 품목군별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정으로 구성

N

■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 NAFTA는 미국의 자본과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

되는 거대 단일시장의 구축을 의미

■ **New Economy**

정보기술(IT) 혁명과 지식산업이 이끄는 고성장, 저물가의 새로운 경제체제. 다른 말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라고도 함. 전통적 경제이론에서 호황은 인플레이를 동반하지만 인플레이 없는 호황을 구가

■ **Negative 방식**

지정된 특정재료가 역외산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특정공정기준

○

■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인 OEM과 구별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차대전후 유럽의 부흥경제협력을 추진해 온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개발도상국 원조문제 등 새로 발생한 경제정세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개편, 1961년 9월 30일 발족한 기구. 목적은 재정금융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용,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세계무역의 다각적이고 차별 없는 확대에 공헌하기 위한 것임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자기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

품을 생산하는 방식

■ Oil Dollar

산유국이 석유의 소득세, 이권료 및 직접 판매에 의해 받은 외화. 외화 중에서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일달러라고 불리게 되었다. 산유국이 보유한 달러 이외의 외화를 포함해서 오일머니(Oil money) 라고도 함.

■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1960년 9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 5개국이 결성한 자원카르텔. 2007년 회원국은 현재 중동 6개국, 아프리카 4개국,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12개국. OPEC는 세계 산유량의 40.3%를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 러시아 등의 자체 소비를 감안하면 실제 석유시장의 60%를 공급

■ Out-quota

세울 연간 할당물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

P

■ Perfect Competitive Market

가격이 완전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 즉 시장참가자의 수가 많고 시장참여가 자유로우며 각자가 완전한 시장정보와 상품지식을 가지며 개개의 시장참가자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매매되는 재화가 동질일 경우 완전한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러나 완전경쟁 시장이란 개념은 분석상의 이론 가설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

■ **Post audit**

수입통관 완료 후에 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정확도를 확인, 심사하는 것

■ **Post management**

용도세율적용물품, 감면물품, 분할납부물품 등은 관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 경우이므로 정해진 용도 사용자에게 의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제도

■ **Positive 방식**

지정된 특정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특정 공정기준

■ **Protective tariff**

국내 산업을 보호 장려할 목적으로 해당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 **Provisional tariff**

기본세율과 함께 ()로 통상 표시되며,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함.

R

■ **Retaliation duty**

무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항공기 등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

■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 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역 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룸

S

■ **Safe 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대함에 따라 자기나라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품목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것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라틴아메리카 국가간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1980년도에 체결된 몬테비데오 조약에 근거한 지역협정인 ECA를 모델로 한 것으로 FTA의 느슨한 형태(준FTA)라고 할 수 있음

■ **SME(Square Meter Equivalent)**

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

■ Smuggling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유입하는 행위

■ Special Emergency duties on Agricultural, Forest and Livestock Products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 또는 수입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대통령령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T

■ Tariff quota system

특정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일정한 수입량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율제도

■ Tariff schedules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로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할 관세율을 규정한 표

■ Tariffication

관세화라 함은 무역제한조치들을 상응하는 관세나 관세율 쿼터로 변환시킴을 의미.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UR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

- TE(Tariff Equivalent)

농산물 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효과에 상응한 관세

- TPL(Tariff Preference Levels)

NAFTA를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는 협정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특혜쿼터

- Transaction process

거래단계, 무역거래에서 상품판매 및 대금결제 등을 위하여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 TRQ(Tariff rate quota)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V

- Verification of origin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관세당국(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실시하는 것으로서, 협정에서는 “검증(verification)”, 관세법에서는 “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현장 실무에서는 “삼사”라는 용어와 혼용 사용하고 있음

- VP(Value of parts)

전체 부품 중 역내산 부품의 최소비율 요구기준

W

■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법규 및 관세기술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단순화와 조화,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설의 통일 등을 목적으로 1953년 설립, 관세법규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1994년 6월 총회에서 관세협력이사회(CCC)의 명칭을 WCO로 개칭하기로 결정하고, 10월 3일부터 법률적 성격의 사용에서만 CCC로 하고 그 밖에는 WCO로 사용하기로 함

■ Wholly obtained criterion

어떤 물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1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설립 협정에 의해 설치된 UN 전문기구 중 하나로 1974년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간 기구. 사무국은 제네바 소재. 21개의 국제조약을 관장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세계무역질서를 이끌고 갈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 1947년에 설립돼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체제를 대체하였다.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는 GATT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 조정기능과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제재할 수 있음

Y

■ Yarn Forward

섬유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한 국가에서 만든 경우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 직물, 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

ㄱ

■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주요한 제조방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의류·봉제공정 등에 주로 적용.

■ 간접검증

수입국 세관당국이 원산지증명서 등 서면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원산지의 진정성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한·EFTA FTA의 경우, 간접 검증제를 택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수입국 세관직원의 조사참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ASEAN FTA는 선 간접검증 후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과정에서 사용은 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물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물품. 한·칠레 FTA에서는 생산지역에

관계없이 원산지재료로 간주.

■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수입물품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일정한 조정을 거친 가격을 말하며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이 됨.

■ **경정(Rectification)**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추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 고지하는 것(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 **계절관세(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관세법 제72조).

■ **공장도가격(Ex work Price)**

생산자의 공장에서의 제도가격으로 책정된 물품의 가격

■ **공제법(Build-down Method)**

역내부가가치 계산 시 비원산지재료의 부가가치를 물품가격에서 공제해 나가는 방식

역내부가가치비율(RVC)=
 (조정가격(AV)-비원산지재료가치(VNM))/조정가격(AV)×100

■ 관세장벽(Tariff Barriers)

무역수지 개선 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각국에서 관세장벽 강화

■ 기관증명

원산지증명서를 정부기관 또는 법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제도로 한·싱가포르 FTA 및 한·ASEAN FTA에서 채택

■ 기국주의(Maritime Flag State)

공해상 선박은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완전생산기준에서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당해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바, 이때 선박요건에 기국주의를 채택

■ 긴급관세(Emergency Duty)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동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부과하여야 할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관세법 제65조)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 FTA 특례법에서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물품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등이 확인된 때,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 한·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Safeguards를 규정하고 있음(제4조, 제5조).



■ 누적기준(Accumulation)

FTA 체결국가 간 원부자재의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를 상대국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재료누적, 공정누적, 부가가치누적 등이 있음.



■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본질적 특성·기능·구조 등이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또는 원재료)의 원산지는 품목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고관리기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

■ 덤핑방지 관세(Anti-Dumping Duty)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등이 확인되고 당

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기획재정부령으로 물품,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관세법 제51조).

ㄹ

■ 롤업(Roll-up)

흡수원칙(absorption)이라고도 함. 역내부가가치 계산시 비원산지 재료(중간재)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또 최종제품에 사용되면 해당 재료 전체를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방식.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및 한·ASEAN FTA는 협정에서 적용. 반면 한·EFTA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 롤다운(Roll-down)

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가공을 거쳐 생산된 중간재가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여기에 투입된 역내재료와 부가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음.

□

■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하며 비원산지재료의 금액 또는 수량이 미미(관세가격의 8~10%, FTA별 품목별로 상이)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한·싱가포르 FTA는 기초농산물(HSI류~14류)에 대하여는 최소 허용기준을 인정하지 않음.

바

■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에 접속된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특정수역. 연안국이 당해 수역의 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에 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

■ **별송품(Unaccompanied Baggage)**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나 선박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여행자와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 예) 이사회물 등

■ **보복관세(Retaliatory Duty)**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부과하는 관세.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국가·물품 수량·세율·적용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관세법 제63조).

■ **보정(Correction)**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 신고납부한 날부터 67개월 이내에 이를 바로잡는 행위(관세법

제38조의2)

-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이에는 국내 혹은 역내가치 비율의 최소비율을 정하여 그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는 국내가치함량(DC, Do-mestic Content) 기준 또는 역내가치함량(RVC, Regional Value Content)기준과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는 수입산 함량(MC, Import Content)기준이 있음. NAFTA 등 미주지역 FTA에서는 통상 RVC방식을 EU지역에서는 MC방식을 사용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RVC와 MC방식을 다양하게 사용. 한·ASEAN FTA는 MC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칠레, 싱가포르, EFTA는 RVC방식을 채택.
- **불인정공정기준(Non-qualifying operation)**
 최소가공(minimal process)기준 또는 불충분가공(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기준이라고도 하며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역내에서 수행한 공정이 단순·경미한 작업 등에 불과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을 의미. 칠레와 EFTA는 해당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와 ASEAN은 예시형태를 취하고 있음.
- **비관세장벽(NTB : Non Tariff Barrier)**
 관세이외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 수입수량 할당, 수출금융, 각종 인증제도 및 규제적 절차 등이 해당.

- **비원산지 재료가치(VNM : Value of Non-origination Materials)**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비원산지재료는 확인된 역외산 재료와 함께 그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재료도 포함

人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국내산업의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조금등을 상쇄할 목적으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관세법 제57조).
- **서면조사**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및 동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입국세관이 수출국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 등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조사방식.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 채택.
- **선입선출법(FIFO : First in First out)**
먼저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 선택기준

당해 물품의 원산지 기준결정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제시된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가 당해 물품의 상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HS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변경기준이 사용됨.

■ 세트물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중 비원산지 가격이 15%를 넘지 않을 때 전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한·EFTA에만 규정되어 있음.

■ 수정신고(Amended Declaration)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 규정에 따라 바로잡아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 수출자인증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성실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온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정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실질변형기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허용하는 바, 이를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

■ **심사청구(Examination Request)**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관세법 제119조 제1항).

■ **심판청구(Adjudication Request)**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국세심판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

○

■ **역내부가가치기준(RVC : Regional Value Contents)**

당해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기준 이상 이면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

■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당사국이 원재료, 부품을 수출해 역외지역에서 가공한 뒤 재수입된 최종물품에 대해 일정 요건 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 연차세율

협정체결 시 관세철폐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도래시까지 연도별로 적용하여야 할 협정세율 정한 것.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주로 농업과 광업제품 등 1차 상품이 해당.

■ 용도세율(Specific use Duty Rate)

물품의 성상이나 쓰임새에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정책목적상 특정 용도에만 사용토록 정하고 그 대신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혜택을 주는 세율.

■ 원산지(Origin)

어떤 물품이 성장(growth),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processing)된 지역을 의미. 물품의 국적에 해당.

■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요건, 기재내용의 정확성, 결정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

■ 원산지결정기준(Criterion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구분하며 실질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공정기준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단독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으로 사용.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물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는 협정에서 이를 정하고 있고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특례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을 두고 있음.

■ 원산지불명재료의 가치(VUOM : Value or Unknown Originating Materials)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계산할 경우,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확인이 되지 않는 재료의 가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

■ 원산지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판정이라고도 하며 물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수입자 또는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하는 것.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는 협정에 규정. EFTA, ASEAN은 특례법령에 규정.

■ 원산지 재료가치(VOM :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등을 포함한 CIF 가격이다. 직접법 계산시 분자가격으로 사용됨으로 한·칠레 FTA 및 한·ASEAN FTA에서 사용.

■ 원산지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

당해물품이 당해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음을 세관, 수출자 등 발행권한이 부여된 자가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호혜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율의 적용을 위한 관세의 감면혜택의 부여 목적, 선진국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목적, 기타 국별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발급

■ 원산지 통보서

한·칠레 FTA에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당해 물품이 역내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통보하면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이때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통보하는 서류가 원산지통보서임. 한·칠레를 제외한 기타의 FTA에서는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용어를 정의(특례법고시 제1-0-2조 3호).

■ 이의신청(Administrative Protest)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불복절차(관세법 제119조 제1항).

ㄷ

■ 자율증명

수출자가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한·칠레 FTA 및 한·EFTA FTA에서 채택.

■ 조정가격(AV : Adjusted Value)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

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 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포함함으로 통상 FOB가격이 됨.

■ **조정관세(Adjustment Duty)**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거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세율을 말함.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관세법 제69조).

■ **조합기준**

실질변형기준 적용시 2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통상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적용.

■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

롤업, 롤다운 참조

■ **중립요소(Neutral Element)**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물품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결합되지 아니하는 요소. 한·칠레 FTA는 간접재료로 표현, 기타의 FTA에서는 중립요소로 표현하고 있고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아니함

■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당국이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진정성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거리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 공정, 관련 장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방식.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 채택하고 있고 한·ASEAN FTA의 경우, 수출국 세관의 간접검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수입국 세관의 직접검증을 허용하고 있음.

■ 직접법(BD : Build-up Method)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중의 하나로 물품가격에서 역내산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한·칠레 FTA와 한·ASEAN FTA에서 채택.

■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당해 물품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 관세를 적용하는 원칙. 다만, 제3국 세관 당국의 감시 하에 운송·재포장 등 단순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모든 FTA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한·ASEAN FTA는 제3국 발행 송장도 인정.

E

■ **탁송품(Consignment)**

물품을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고 별도로 보내(오)는 물품. 거래처에서 보내오는 샘플 등이 해당.

■ **특별긴급관세(Special Emergency Tariff)**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관세. 부과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함(관세법 제68조).

■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특정 교역대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세율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통칭. FTA도 대표적인 특혜관세

■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GATT 1조의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예외.

II

■ **평균법(Average Method)**

판매(또는 생산) 시점에 재고로 보관된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의 구성비율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가격은 원산지

별 재고물품의 총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로 하는 방법. 대체가능물품에 대한 재고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결정시 사용.

■ 품목별원산지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

협정에서 HS code별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 칠레는 협정 부속서4, 싱가포르 부속서4A, EFTA 부속서1 부록2, ASEAN 부속서3에 규정.

■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수출입물품을 관세목적상 일정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물품별로 일정한 명칭 및 부호를 부여하여 하는 작업. HS 품목 분류는 모든 물품을 21부 96개류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4단위호, 6단위 소호로 분류. 우리나라는 10단위 HSK를 사용.

ㅎ

■ 할당관세제도(Tariff Quarter System)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저한 일정 수입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를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율 제도.

■ 현지조사

수입국 세관당국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의 진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출국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조사.

■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거 부과하는 관세.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교역량 증진 등을 위하여 통상의 실행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FTA 협정세율 등이 이에 해당.

■ **후입선출법(LIFO : Last In First Out)**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 **휴대품**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한 · EU FTA

수출입통관 매뉴얼

2011년 9월 인쇄 & 발행

발행처 | 외교통상부
주벨기에 · 유럽연합대사관

펴낸곳 | 애드컴서울
편집실장 | 전선례
디자인 | 고명재
인쇄제작 | 애드컴서울
주소 |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92-30
전화 | (02)2285-6601~2
팩스 | (02)2268-3599